

[서식 2] 이력서

■ 국립부경대학교 조교 인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이 력 서

사진 (3.5cm x 4.5cm)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성별	
		한자		영문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휴대폰)	
학 력	기 간		대학교명(학사 이상)		학과·전공명		
	~						
	~						
	~						
경 력	기 간(년월일)		근 무 처	직 위(급)		업 무 내 용	
	~						
	~						
	~						
	~						
자 격 및 면 허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처	
병 역	복 무 기 간		군 별	계 급	병 과	미 필(체격등위)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3] 자기소개서

■ 국립부경대학교 조교 인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 (남. 여)
-----	-----------	------	--------------

지원동기 및 지원자격 적합내용	
휴먼명조, 10포인트로 작성	
경력 및 담당한 업무 추진내용	
휴먼명조, 10포인트로 작성	
지원부서의 업무 이해내용	
휴먼명조, 10포인트로 작성	
조교 업무 수행계획 및 학내구성원(학생·교원·직원) 협업계획	
휴먼명조, 10포인트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국립부경대학교 조교 채용 과정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의 비동의

2026년 월 일

□ 대상자 본인

- | | | |
|----------|------|-----------|
| ▪ 성 명 | (서명) | ▪ 생년월일 |
| ▪ 자택전화 | | ▪ 휴대전화 |
| ▪ e-mail | | |
| ▪ 직 장 | | ▪ 직 위 |
| ▪ 직장전화 | | ▪ 연락가능 팩스 |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조교 채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 시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등 채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채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